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조건부 재허가'

- 공적 책임 실현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위한 7개 조건 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주)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재허가 조건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완 (02-2110-1610)
		담당자	사무관	윤진수 (02-2110-1617)

1.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가 청문절차 진행 중 회수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대여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대여, 회수, 잔액, 담보 제공 등)을 독립적인 감사의 검토와 이사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PP평가 및 이용약관 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및 일반 PP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배분하여야 한다.
 - 단,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6.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기재한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관련 실적(본방송 비율, 투자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 결과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실적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은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장 포함)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등 요구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